

[별첨]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2025년 12월 (기준)

목 차

I.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1
II. 연구개발비 계상 시 고려사항 요약	2
III.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3
① 직접비	3
② 간접비	5
[참고자료1] 전문기관 규정(내부 규정이 없을 경우 참고기준으로 활용)	8
[참고자료2]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	10
[참고자료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기관 목록	15

I.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1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차등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중소기업	연도별 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중견기업	연도별 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은 25% 이상)*
공기업 및 기타기업	연도별 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비영리법인(대학, 출연연 등)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없음

* 「초기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변동 비율 적용(상기 내용 변동 가능)

* 관련 용어 정의

- 영리기관 :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기업)
 - * 영리기관은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 등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관
 - ※ 영리기관은 중소·중견·대기업·공기업 또는 국세청이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포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장형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
-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go.kr) > 공공기관 현황정보 조회 가능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현물 부담 기준

-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해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해야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중소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3% 이상
대기업·공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5% 이상

* 현금 및 현물 기준

- 현금: 과제의 연구개발비 계정에 현금을 부담(산입)하여 집행
- 현물: 연구원의 인건비, 보유한 기자재 등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

* 현물 허용 대상

- 기업이 참여연구자에게 자체 자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활동비 내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

* 「초기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변동 비율 적용(상기 내용 변동 가능)

II. 연구개발비 계상 시 고려사항 요약

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고려사항

비목	계상 가능 주요 비용	계상 비율 제한	협약변경		고려사항
			증액 가능	감액 가능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	○ 영리기관의 신규채용 연구자 현금 인건비 감액은 협약변경 승인사항, 증액은 협약변경 통보사항 ○ 영리기관은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
	학생인건비	학생연구자 인건비 (연구개발비(직접비)대입등인경)	-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실행행액으로 사용실적 보고 * 통합관리계정의 잔액을 다음연도 수입액으로 처리하여 사용. 단,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의 일부를 기관 계정으로 이체/대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국고로 반납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계정이 없을 경우에도 국고 반납 ○ 박사후연구원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 * 근로계약 체결 후, 인건비로 지급
	연구시설·장비비	시설·장비의 구입 및 임차 비용 (연구행에 직접적으로 사용)	-	△	○ 건당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시설·장비는 구입 또는 임차 이전에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 건당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시설·장비는 구입 또는 임차 이전에 전문기관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 승인을 받은 건당 3천만 원 이상(VAT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변경하거나,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 필요(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집행 불가. 회수 원칙) * 영리기관 연구시설·장비 현물계상한도 연구개발과제 시작 전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구입가의 20% 내에서 현물로 계상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 계상 연도 말일 이후)
	연구재료비	재료·부품비 사출비용비등 (연구행에 직접적으로 사용)	-	○	○ A4용지, 토너 등 소모품은 연구재료비가 아닌 연구활동비로 계상하는 것을 권고(비영리기관만 해당, 영리기관은 소모품 계상 불가)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있음	△	○ 비율 제한: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의 40% 이내 *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단, 현물은 포함 ○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가능(공동연구개발기관은 계상 불가)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승인 기준) 보다 20% 이상 증액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 필요 ○ 위탁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과제대상 과제이므로 부가세 포함
	연구활동비	출장비, 회의비, 사무용품, 수수료 등 (연구수행시 발생하는비용)	있음	△	○ 비율 제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 이내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 영리기관 기술도입비 현물계상한도: 실제기술도입비용의 50% 이내 계상 (해당 기술 도입 완료일이 연구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총금액, 품목 변경, 특정 품목 수량 증가) 변경 전문기관 승인 필요 * 협약체결 후 협약변경을 통해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신설(추가) 가능 ○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는 최종(각 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시 현금계상 가능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활동비에서 제외
	연구수당	참여연구자의 성과에 대한 보상금	있음	×	○ ○ 비율 제한: [인건비(현금+현물)+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의 20% 이내 * 인건비에서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직접비) 인건비는 제외 ○ 수정인건비가 협약 체결 당시 계획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 변경 가능하나 단계 변경 시점에만 증액 가능 ○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기관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지급하되, 한 명의 연구자에게 70% 초과하여 지급 불가 ○ 연구수당 이월 불가능
간접비	간접비	특히 출원·등록,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있음	△	○ ○ 비율 제한: 각 기관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함 * 간접비는 기관유형별, 용도별 비율제한이 있으며, 세부 계상기준 확인
	공통 고려사항	○ 연구개발비 정산 시, 현물 부담액이 계상금액 보다 부족하면 현금으로 회수되므로 현물 계상·관리에 주의 ○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간 거래는 정산 시 불인정되니 계상 시 주의 ○ 위탁연구개발은 연구개발과제 안의 연구개발과제의 개념으로, 일반 용역과는 다른 개념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세부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연구개발성과 등을 관리해야 함) * 연구개발과제의 개념이 아닌 제작 용역 등은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등에 계상,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단계·최종보고서 등 결과물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으므로 주의 ○ 연구근접지원인력(직접비)과 인력지원비(간접비) 중복 계상 불가			

III.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34호, 2024. 12. 31., 개정) 별표 2]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 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숙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자)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카)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차. 보안수당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력성과급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

	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 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 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원·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 2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 2의3. “박사후연구자”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 참고자료 -

[참고자료1] 전문기관 규정 * 내부 규정이 없을 경우 참고기준으로 활용

[참고자료2]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

[참고자료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목록

[참고자료1] 전문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규정

※ 내부 규정이 없을 경우 계상기준 설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여비 지급기준(단위: 원)

구분 직급 (직위)	교통비				숙박비 (1야당)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버스)			
임원	실비 (특실)	실비 (1등)	실비	실비	실비	25,000	25,000
직원	실비 (일반)	실비 (2등)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25,000

2) 시내교통비 지급기준

- o 출장시간 4시간 이상 시 2만원 지급
- o 출장시간 4시간 미만 시 1만원 지급

3) 국외여비 지급기준(단위: US\$)

직급 (직위)	등급	일 비 (1일당)	숙박비		식 비 (1일당)	항공임
			1야당	할인정액		
원장	가 나 다 라	50	실비(상한액: 389)	331	160	비즈니스
		50	실비(상한액: 289)	246	117	
		50	실비(상한액: 215)	183	87	
		50	실비(상한액: 161)	137	73	
부원장	가 나 다 라	40	실비(상한액: 282)	242	133	비즈니스
		40	실비(상한액: 207)	176	99	
		40	실비(상한액: 162)	138	72	
		40	실비(상한액: 108)	92	61	
비상임 임원	가 나 다 라	35	실비(상한액: 223)	190	107	비즈니스
		35	실비(상한액: 160)	136	78	
		35	실비(상한액: 130)	111	58	
		35	실비(상한액: 85)	72	49	
직원 (G1~G4)	가 나 다 라	30	실비(상한액: 176)	150	81	이코노미
		30	실비(상한액: 137)	116	59	
		30	실비(상한액: 106)	90	44	
		30	실비(상한액: 81)	69	37	
등급	대 상 지 역					
가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1)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바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1)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중동·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1)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남·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4)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4) 전문가 수수료 지급 기준

구분	대상	등급/대상	지급금액	비고
학술 행사비	발표자/사회자/ 토론자	1등급	500,000원	
		2등급	400,000원	
		3등급	300,000원	
강사료	강사	1등급	300,000원/시간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강사료는 별도 지침에 따름
		2등급	200,000원/시간	
		3등급	100,000원/시간	
심사(평가)비		위원장	100,000원/평가당	1일 최대 6시간, 국외의 경우 실소요액
		심사(평가)위원	100,000원/시간	
일반 자문비		－	100,000원/시간	1일 최대 3시간, 국외의 경우 실소요액
법률 등 자문비		－	실소요금액	법률,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자문
원고료	집필자	1등급	40,000원/A4 1매	원고내용, 등급, 사안의 중요성, 원고 집필자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 120% 범위 내로 가중치 적용
		2등급	32,000원/A4 1매	
	디자인료	PPT 기준	50,000원/A4 1매	
교정료	단순교정	국문	2,000원 이내/A4 1매	
		외국어	4,000원 이내/A4 1매	
	윤문교정	국문	3,000원 이내/A4 1매	
		외국어	6,000원 이내/A4 1매	
통역료	동시통역 (전문통역사)	1등급	1,000,000원 이내/1일(6시간)	2시간 이하 기준액의 80%내, 6시간 초과 시 15만원 (시간당, 최대 2시간)
		2등급	800,000원 이내/1일(6시간)	
		3등급	600,000원 이내/1일(6시간)	
	외국어도우미	외국유학생	120,000원/1일(6시간)	
번역료	번역자	외국어⇒한글	30,000원/A4 1매(25행)	1장미만 번역 한국어 5만원/외국어 10만원
		한글⇒외국어(영일)	60,000원/A4 1매(25행)	
		외국어⇒기타외국어	60,000원/A4 1매(25행)	
감수료			필요시 번역료의 20% 반영	

※ 등급기준

o 학술행사비, 강사료

- 1등급 : 대학 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2등급 : 대학 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o 원고료

- 1등급 : 대학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전임강사 이상 /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 / 언론기관, 전문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주요기관의 임원(집행간부) 및 부장급 이상 / 기타 1호~3호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
- 2등급 : 해당분야의 학식과 지식이 있는 1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o 통역료 등급기준

- 1등급 : 경력 10년 이상
- 2등급 :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 3등급 : 경력 5년 미만

※ 원고료, 교정료, 번역료 분량 기준

- o A4 1매 : 200자 원고지 4장 기준 / 12Font / 35Line, 신명조, 상하15mm, 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여백 20mm

※ 전문가 수수료는 외부인사에 한하여 지급 가능함(내부직원 지급 불가)

5) 기타 비용

- o 특근매식비 : 특근자 1인당 9,000원 이내
- o 회의비 식대 : 참석자 1인당 50,000원 이내

[참고자료2]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 (25.03.06)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2025030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 기준으로 정산 시 달라질 수 있음.
- ※ 협약체결 시점의 간접비 고시기준 적용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정부출연연구기관 (24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1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3.7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2.55
	한국기계연구원	13.1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9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4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2.65
	한국식품연구원	23.1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6.4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7.03
	한국원자력연구원	22.89
	한국재료연구원	10.30
	한국전기연구원	14.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3.78
	한국천문연구원	19.0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2.1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80
	한국한의학연구원	22.4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3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1.9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6.02
	한국화학연구원	20.09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7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5.00
	국가녹색기술연구소	16.35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9.26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극지연구소	8.0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4.93
	세계김치연구소	17.77
	안전성평가연구소	17.34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특정연구기관 (12개)	광주과학기술원	26.49
	기초과학연구원	5.0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8.84
	울산과학기술원	25.6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18
	한국과학기술원	23.50
	한국과학창의재단	17.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2.99
	한국세라믹기술원	20.3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0.19
	한국원자력의학원	27.0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7.24
특정연구기관 부설연구소 (5개)	고등과학원	19.73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5.0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1.67
	나노종합기술원	16.39
	한국뇌연구원	29.70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16.11
	한국광기술원	20.30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0.70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21.88
	한국소재융합연구원	25.85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한국자동차연구원	18.30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4.13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2.13

4. 대학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가천대학교	26.38	국립한국해양대학교	20.92
가톨릭관동대학교	22.94	국민대학교	20.04
가톨릭대학교	25.55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7.43
강남대학교	14.54	극동대학교	5.19
강릉원주대학교	22.86	금오공과대학교	25.28
강원대학교	23.25	나사렛대학교	16.33
건국대학교	30.14	남부대학교	24.13
건양대학교	28.33	남서울대학교	30.13
경기과학기술대학교	15.52	단국대학교	23.90
경기대학교	21.06	대구가톨릭대학교	28.41
경남대학교	26.68	대구대학교	24.46
경북대학교	26.55	대구한의대학교	25.24
경상국립대학교	22.40	대전대학교	23.15
경성대학교	20.14	대진대학교	30.13
경운대학교	10.48	덕성여자대학교	29.96
경인교육대학교	13.15	동국대학교	25.61
경일대학교	20.99	동덕여자대학교	22.65
경희대학교	23.78	동명대학교	25.46
계명대학교	23.64	동서대학교	23.10
고려대학교	23.98	동신대학교	21.27
고신대학교	29.09	동아대학교	26.09
공주대학교	24.92	동양대학교	11.76
광운대학교	26.72	동양미래대학교	5.19
광주대학교	20.31	동의대학교	21.76
광주여자대학교	5.19	명지대학교	29.34
국립군산대학교	20.58	명지전문대학	5.19
국립암센터국제암 대학원대학교	12.98	목원대학교	28.74
국립한국교통대학교	18.70	목포대학교	15.25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목포해양대학교	18.30	연세대학교	26.96
배재대학교	27.68	영남대학교	24.38
백석대학교	28.21	영산대학교	15.51
부경대학교	23.02	용인대학교	12.62
부산가톨릭대학교	24.17	우석대학교	28.13
부산대학교	20.65	우송대학교	28.42
부산외국어대학교	29.09	울산과학대학교	7.28
부천대학교	15.32	울산대학교	21.53
북한대학원대학교	5.19	원광대학교	25.91
삼육대학교	32.10	위덕대학교	16.39
상명대학교	27.63	육군사관학교	9.98
상지대학교	29.09	을지대학교	21.19
서강대학교	29.87	이화여자대학교	27.54
서경대학교	21.93	인덕대학교	18.3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7.86	인제대학교	22.20
서울교육대학교	11.88	인천대학교	26.30
서울대학교	24.69	인하공업전문대학	19.91
서울미디어대학원 대학교	25.54	인하대학교	27.40
서울시립대학교	26.77	전남대학교	22.50
서울여자대학교	20.11	전북대학교	19.84
서원대학교	27.23	전주대학교	27.00
서일대학교	14.03	제주국제대학교	21.42
선문대학교	27.62	제주대학교	24.89
성결대학교	5.19	제주한라대학교	5.19
성공회대학교	9.54	조선대학교	26.93
성균관대학교	22.93	중부대학교	21.27
성신여자대학교	29.96	중앙대학교	23.34
세명대학교	20.72	중원대학교	31.24
세종대학교	25.11	차의과학대학교	29.74
수원대학교	22.30	창신대학교	18.21
숙명여자대학교	24.69	창원대학교	23.84
순천대학교	19.42	청운대학교	20.32
순천향대학교	21.42	청주대학교	12.59
송실대학교	26.22	춘천교육대학교	14.22
신라대학교	27.84	충남대학교	22.56
아주대학교	25.99	충북대학교	22.04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안동대학교	19.36	평택대학교	5.19
안양대학교	23.80	포항공과대학교	23.19
한경국립대학교	24.78	한동대학교	24.54
한국공학대학교	20.98	한라대학교	20.32
한국교원대학교	18.16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8.2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8.32	한림대학교	18.30
한국농수산대학교	17.69	한밭대학교	26.3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19	한서대학교	29.8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6.60	한성대학교	25.53
한국예술종합학교	15.16	한신대학교	10.63
한국외국어대학교	29.34	한양대학교	26.11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32.20	한양여자대학교	13.9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3.81	협성대학교	19.47
한국체육대학교	20.50	호남대학교	21.92
한국항공대학교	29.96	호서대학교	28.69
한남대학교	23.91	홍익대학교	5.19

5. 기타비영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기타비영리기관 (7개)	고등기술연구원	18.40
	삼성서울병원	22.03
	키엘연구원	18.56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7.10
	한국나노기술원	17.55
	한국선급	24.52
	한국패스퇴르연구소	36.80

[참고자료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목록

※ 2025. 3월 5일 기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신규지정 및 연구개발기관단위전환 기관 목록

구분	기관명
신규 지정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개발기관단위 전환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 신규 및 전환 지정·시행일 : 2025. 3. 6.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체 목록 (가나다순)

구분	기 관 명	
	연구책임자단위	연구개발기관단위
대학 (62개)	경남대, 경북대, 경희대, 계명대, 국립금오공대, 국립목포대, 국립부경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상명대, 서강대, 숙명여대, 숭실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인제대, 인천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한국교통대, 한국외국어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가천대,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경상국립대, 고려대, 광운대, 국립공주대, 국립창원대, 대구가톨릭대, 덕성여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한밭대, 한국에너지공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 한양대
출연(연) (4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특정(연) (4개)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